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가단5261044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2015. 5. 14.

판결 선고2015. 5. 28.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1,528,950원 및 그 중 91,064,109원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2014. 10. 27.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14. 6. 13.

체결된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하고, 피고 C는 피고 B에게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14. 6. 20. 접수 제8012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1. 구상금 청구 및 사해행위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2012. 3. 2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보증원금 90,000,000원, 보증기한 2013. 3. 28.(후에 2014. 3. 27.로 변경)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 회사 및 연대보증인인 피고 B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 비용 등의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2) 피고 회사가 2014. 2. 13. 휴·폐업으로 인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14. 5. 30. 위 은행의 요청에 따라 위 은행에게 대출원리금 91,864,10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 후 원고가 2014. 6. 2. 피고 회사 및 피고 B로부터 800,000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은 91,064,109원이 남게 되었다.

3) 원고가 피고 회사 및 피고 B에 대한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보전비용으로 215,249원을 지출하였고, 그밖에 약정 위약금 248,540원, 위 일부 회수된 800,000원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 1,052원이 발생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잔액 91,064,109원,

위약금 248,540원, 채권보전비용 215,249원, 확정지연손해금 1,052원의 합계 91,528,950원 및 그 중 위 대위변제금 잔액 91,064,109원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인 2014. 5. 30.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4. 10. 2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채권은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다툼 없는 사실, 갑 8호증, 을다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2014. 6. 13.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B로부터 피고 C 앞으로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14. 6. 20. 접수 제8012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위변제일 후에 피고 B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나. 피고 C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툼 없는 사실, 갑 8, 을나 1, 2, 을다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 B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피고 C는 피고 B의 이웃 지인인 D의 처이다.

○ D와 피고 B는 2010. 6. 21.경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5천만 원에 공동 매수하면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채무 2,500만 원(등기부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33,000,000원)을 공동으로 인수하기로 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은 각 1,250만 원씩 부담하여 지급한 다음, 2010. 7. 1. D와 피고 B 앞으로 각 1/2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그에 따라 D와 피고 B가 위 근저당채무에 대한 이자를 한달씩 번갈아 가면서 납입하다가 2011. 8.경부터는 D이 이자 전부를 납입하였다. 한편, 2011. 8. 12.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2011. 8. 11.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E에서 D으로 변경되었다.

○ D은 2011. 11.경 피고 B로부터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위 매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매수하였고, 그에 따라 2011. 11. 21. 피고 B에게 1,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D은 위 매수에 따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바로 마치지 않고 그대로 두었고, 그 후 2014. 6. 20.에야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소결론

원고는 선의의 수익자인 피고 C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이창현

별지